

현 장 설 명 서 및 특 기 시 방 서

[의료장비(Angio) 도입관련 시설공사]

- 소방 -

강원대학교병원

I . 일반사항

1) 공 사 명 : **의료장비(Angio) 도입관련 시설공사(소방)**

2) 공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본관 1층

3) 공사개요

가) 공사규모

- 층 수 : 본관동 1층
- 구 조 체 : 철근콘크리트조
- 공사범위 : 본관동 1층 Angio-1, Angio-2

나) 공사내용

1. 소방공사

- ① 소방설비 철거공사 :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철거
- ② 소방(기계)설비 공사 :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설치, 스프링클러 배관 수정 설치 작업
- ③ 소방(전기)설비 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유도등설비 소방기구 설치, 전선관 및 전선 수정 설치 작업

4) 공사기간 : 착공 후 90일

5) 공사면허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중 1

II . 특기사항

- 1) 본 공사는 **의료장비(Angio) 도입관련 시설공사(소방)**로서 재사용 집기류 및 기자재를 파악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하고,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적재하여 추후 반출 처리한다.
- 2)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하며 현장 시공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시 계획서에 의한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약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의 보안에 대한 사항, 안전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진다.
- 4) 공종별 공사착수(예정공정표 제출 및 승인) 및 다음 공정에 임할 시 감독관의 승인 후 진행하고,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자재승인서 제출 및 승인)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5)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 오기 되거나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 확인 후 계약자가 시행한다.
- 6) 본 공사 발주당시의 설계조건과 현장여건을 파악하고 정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주위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안전시공은 물론 설계도서상 요구하는 적합한 품질 및 기능을 갖

준 시설이 되도록 한다.

- 7) 계약자는 공사 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본 계약도서에 비하여 동등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완과 추가로 설계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8) 계약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후 제출하여야 한다.
- 9) 본 공사 시공중 필요시 모든 대 관청 각종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가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준공 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시설물의 인계인수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 10) 공사 및 시험운전 등에 필요한 부대비 등 사용료는 각 공종별 계약자가 부담한다.
- 11) 본 공사에 있어 계약자는 현장에 가설공사(가설칸막이 설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은 물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건물 및 인명사건 발생시 계약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12) 본 공사는 천재지변의 경우와 발주관청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정한 지체보상금을 부과한다.
- 13) 본 공사 중 부득이 야간작업을 해야할 경우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4) 본 공사중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에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 15)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 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16) 모든 외주 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 17) 아래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토록 한다.
 - 가) 주요공정검사 : 마감공정상태 등
 - 나) 기성부분검사 : 실제 이루어진 부분으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함.
 - 다) 준 공 검 사 :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음.
- 18) 본 공사시방은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년도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19) 본 공사시 계약자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현장 내 먼지 배출 장치 설치)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 작업차량과 기타 사항으로 민원발생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한다.
- 20)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의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1)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제작도면, 설치요령서, 취급요령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 22) 현장설명서만 배포하고, 열람용 도면은 현장설명 장소에 비치한다.
- 23) 각 공사 진행 시 주의 사항

- 가) 현장 여건 및 공정 진행 상황에 의하여 야간작업 시행 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에 주의한다.
- 나) 당 현장의 특수성(종합병원)을 작업자에게 인지시키고 각 공정을 진행한다.
- 다) 각 공정에 사용한 자재 및 공구는 작업 종료 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분실 및 도난에 주의하고 모든 책임은 계약자 진다.
- 라) 공사 중 현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에 주의하며 보양(바닥 보양 및 기존 시설물 비닐 보양 설치)을 철저히 해야하며, 기존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훼손된 기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해당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사) 원가계산 시 법적 요율 준수항목(발주년도 제비율표 적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산처리 함
- 24)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가) 당초 계약된 건설폐기물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 및 기준에 의하여 정산 변경처리 한다.
 - 나)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당해 현장의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 중단을 요구할시 수급인은 즉시 따라야 한다.
 - 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운반비를 조정한다.
 - 마) 공사중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외 자재 포장재, 신규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

< 공사 내용 문의 ☎ 033) 258-9331 >